2017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2492호 및 제2493호

다. 제출일자 : 2018. 5.31

라. 회부일자 : 2018. 6.11

Ⅱ.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Ⅲ.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1. 세 입

 세입예산액은 228억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89억 1천2백만원에 실제수납액은 280억 6천6백만원, 미수납액은 108억 4천6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22,808	38,912	28,066	10,846

2. 세 출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809억 5천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9억 6천 7백만원, 예비비 9억 2천2백만원을 포함한 총 918억 4천2백만원 으로,
- 818억 7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지출액은 720억 6천6백 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17억 6천5백만원, 집행잔액은 80억 1천1백만원임.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전년도 이월액	후 증감액 예비비 지 출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80,954	9,966	922	91,842	81,807	72,066	11,765	8,011

Ⅳ. 결산 주요내용 요약

1. 세 입

- 2017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228억 8백만원으로 389억 1천2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80억 6천6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08억 4천 6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실제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7억 6천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7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 5천만원, 보조금 49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천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징 수 결정액(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일반회계	22,808	38,912	28,066	10,846	72
세외수입	17,455	33,490	22,644	10,846	68
• 경상적세외수입	16,389	22,082	20,768	1,314	94
• 임시적세외수입	1,066	11,408	1,876	9,532	16
지방교부세	450	450	450		100
보조금	4,900	4,900	4,900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	72	72	0	100

○ **주요 세입내역**(실제 수납액 기준)

767 MATT	201억 0선0억단천
재산임대수입	84억 3천5백만원
사용료 수입	46억 9천4백만원
수수료 수입	1억 2천9백만원
사 업 수 입(주차요금)	75억 5백만원
이 자 수 입	5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7천6백만원 과징금및과태료등 2억 4천8백만원 14억 4천3백만원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1억 8천5백만원 - 지방교부세 4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 4억 5천만원 - 보조금 49억원 국고보조금등 49억원 - 보전수입 72백만원

72백만원

보전수입등

2. 세 출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예산현액
	वी भी भी	전용*	변경사용**	
80,954	9,966 922			91,842

*.** : 예산전용, 변경사용은 동일부서의 예산을 사용한 경우, 증감액이 0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91,842	81,807	72,066	11,765	8,011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17년도 예산액 809억 5천4백만원, 전년
 도 이월액 99억 6천6백만원, 예비비 9억 2천2백만원을 합하여 총
 918억 4천2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지출원인행위액 818억 7백만원 중 720억 6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17억 6천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억 1천1백만원임(예산현액 대비 8.7%).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1): 총 8건, 7억 7천6백만원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

¹⁾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는 총 8건에 7억 7천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нп	게 H 기 A	巨利口	트레디 퍼지제		금액	예산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감액	증액	현액
	총 8건			△776	776	
환경보호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561	Δ95		4,466
일반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01-01 시설비			95	95
환경보호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466	Δ10		4,456
일반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10	10
환경보호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456	Δ109		7
일반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401-01 시설비	438		109	547
환경보호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20	△200		220
일반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00	200
환경보호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92	△109		83
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09	109
환경보호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334	△234		4,100
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9,686		234	9,920
환경보호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7	Δ7		
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09		7	116
환경보호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12	Δ12		
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16		12	128

○ 변경사용2): 총 5건, 8천7백만원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 5건, 8천7백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부 문	계보기어	통계목	편성액	변경급	금액	예산
十 七	세부사업	중계속 원정역		감액	증액	현액
	총 5건			Δ87	87	
환경보호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348	Δ14		4,334
일반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201-01 사무관리비	58		14	72
환경보호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85	△34		151
일반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6		34	60
환경보호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84	Δ23		461
일반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20		23	143
환경보호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60	Δ16		44
일반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7		16	33
환경보호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787	△0.5		787
일반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 행경비	53		0.5	53

²⁾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됨

○ 명시이월: 총 2건, 20억 1천1백만원

-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시설비) 8억 7천만원

- 공공 예술공간 조성(경상)(사무관리비) 11억 4천1백만원

○ 사고이월: 총 10건, 97억 5천4백만원

	당초 준공예정일	이월 후 준공예정일	
-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201806.08	悉	6억 5천6백만원
-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7.1231	2018.03.17	2억 1천8백만원
-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2017.11.16	2018.07.16	2억 8천5백만원
-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7.12.13	2018.02.08	12억 1천1백만원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2017.12.31	2018.06.30	7억 3천2백만원
-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	2019.1231	轹	15억원
-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	20180801	骆	1억 4천만원
-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802.28	骆	1천6백만원
- 공공 예술공간 조성 - 경상	2018.0630	骆	3억 2천2백만원
- 공공 예술공간 조성 - 자본	2018.06.30	悉	46억 7천3백만원

○ 예비비: 총 2건, 9억 2천2백만원

 - 소송비용
 4억 5천3백만원

 - 소송 관련 비용
 4억 6천9백만원

○ 집행잔액: 80억 1천1백만원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80억 1천1백만원임.
- 주요 원인별 내역

·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억6천5백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41억9천8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2억4천8백만원

3. 추가경정예산 사업집행(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에서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한강함상 공원조성, 한강관공선등 운영 및 관리 4개 사업 대하여 49억 7천6백만원을 증액한 바 있고,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수상교통수단 확충 1개 사업에 대하여 2억원을 감액한 바 있음.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l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도이월	집행 잔액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58		105	14	110	287	227		60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990				1,200	4,190	3,833		357
한강 함상공원 조성	6,912	550	234		3,316	11,012	9,758	1,211	43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1,664				350	2,014	1,923		91
수상교통수단 확충	200				△200	0	0		0

V. 검토의견

가.세입

□ 세입총괄(※결산서 p. 11)

-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28억 8백만원으로 389억 1천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2%인 280억 6천6백만원이며, 108억 4천6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음.
- 미수납액 108억 4천6백만원은 세빛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플로섬에 부과된 지체상금과 수상업체와 사용수익허가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이 주요 원인임.

⟨표 1⟩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 내역

과목	징수결정액 (가)	실제수납액 (나)	미수납액 (나)-(가)	미수납 발생사유
	25,740	14,894	△10,846	
공유재산임 대료	9,390	8,435	△955	전망카페 중도 허가취소(158백만원) 및 자전거대여점(235백만원) 경영악화 따른 체납 등
하천사용료	5,053	4,694	△359	• 수상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
과태료	391	248	△143	• 최종납기일 미도래 및 납세 태만
그외수입	1,476	1,332	△144	• 수상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
지난연도수 입	9,430	185	△9,245	• 세빛섬 영업공간 미개장에 따른 지체상금(7,827백만원) 및 수상업체 경영난에 따른 체납 등(1,418백만원)

- 서울시에서는 세빛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플로섬에 91억 9천2백만원을 지체상금³)으로 부과하였으나, 20년 동안 ㈜플로섬이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⁴)하여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준 바 있음.



^{3) &}lt;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中

제37조(이행지체) ①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준공·운영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4) 「}서울특별시 세빛등등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①~④ (생략)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 상금 청구를 철회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2〉 연도별 지체상금 부과취소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체상금	사업정산 (감액)	잔 액 (이월)	비고
2015년	9,192	921	8,271	사업 완료후 외부 공공성심의
2016년	8,271	444	7,827	·
2017년	7,827	253	7,574	

- ㈜플로섬에서는 2015년부터 공익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년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연평균 4억 5천9백만원)의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체상금은 한동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임.

⟨표 3⟩ ㈜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체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둔치	수상	합계(가산세 제외)
2012년	15	_	15
2013년	41	22	63
2014년	43	117	160
2015년	45	108	153
2016년	48	55	103
2017년	50	113	163
총계	242	415	657

- 사용수익허가 대상인 전망카페와 자전거대여 업체의 공유재산 임대료체납은 운영업체가 영업 손실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등 '최고가낙찰제'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로 낙찰된 후 기대한 수익을 얻지못해 발생한 것임. 특히, 자전거대여 사업의 경우,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름이'의 설치 확대로 인해 해당 사업의

영업손실 우려를 지적한 바 있어, 앞으로 사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상업체의 하천사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검토 보고서⁵⁾에서는 ㈜서울마리나를 대상으로 '하천사용료 완전 납부를 위한 방안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납이 저조하여 완전 납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5) ㈜}서울마리나는 2011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정상영업 중임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하천사용료를 완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수익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 세출총괄(※결산서 p. 17)

-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809억 5천4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99억 6천7백만원, 예비비 9억 2천2백만원을 합한 총 918억 4천2백만원
 임.
- 예산집행은 818억 7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720억 6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17억 6천5백만원(명시이월 20억 1천1백만원, 사고이월 97억 5천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1천1백만원임(현액대비 불용률 8.7%).

〈표 4〉 최근 3년간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당 초	예산성립	후 증감액		지출원인		다음연도	집행잔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예산현액	행위액	지출액	이 월 액	현 37년 백	
2017	80,954	9,966	922	91,842	81,807	72,066	11,765	8,011	
2016	67,578	7,249	816	75,643	65,789	61,915	9,967	3,761	
2015	62,543	2,023	555	65,121	55,313	52,638	7,248	5,235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인 공공 예술공간 조성 사업 예산으로 90억원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임.

□ **예산 전용(轉用)**(※결산서 p. 42)

 2017회계연도 전용은 총 8건, 7억 7천6백만원으로 주로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와 한강 함상공원 조성을 위해 서로 다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표 5⟩ 2017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н п	게보기어	트 게 ㅁ	퍼션에		전용내역		예산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감액	증액	전용월일	현액
	총 8건			Δ776	776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561	△448			4,113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01-01 시설비			95	2017. 07.16	95
환경보호 일반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10	2017. 07.16	10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401-01 시설비	438		109	2017. 07.16	547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9,686		234	2017. 08.04	9,920
환경보호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20	△200			220
일반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00	2017. 06.20	200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92	△109			83
환경보호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7	Δ7			
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12	△ 12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28	2017. 12.01	128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달존 운영, 단속전담요원 확대,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 등 한강공원의 질서확립 특별대책6)의 일환으로, 「한강 공원 기초질서 유지」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강공원 주 차장 운영」시설비를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⁶⁾ 한강공원 질서 확립 특별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47호, 2017.06.23.)

하였음.

- 또한, 2017년 11월에 개장한 서울함공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한강 함상공원 조성」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동일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임.
 - 다만,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의 예산과 서울함 공원 운영을 위한 「한강 함상공원 조성」민간위탁금은 당해연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자산및물품취득비와「한강 함상공원 조성」시설비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2017.06) 이후에 전용 (2017.07, 2017.08)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한강사업본부가 해당 사업의 추경 예산안 편성에 면밀한 검토를 못함으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후 전용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변경사용(※결산서 p. 41)

 2017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5건, 8천7백만원으로 동일 단위사업내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을 변경사용하였음.

〈표 6〉 2017회계연도 변경사용 현황

н п	부 문 세부사업	巨利臣	퍼서에	변경금액		예산
宁 正	세구사업	통계목 편	편성액	감액	증액	현액
	총 5건			Δ87	87	

нп	게 H 기 A	트레디	퍼지제	변경급	금액	예산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감액	증액	현액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348	Δ14		4,334
환경보호 일반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201-01 사무관리비	58		14	72
환경보호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85	Δ34		151
일반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6		34	60
환경보호 일반	뚝삼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84	Δ23		461
일반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20		23	143
환경보호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60	Δ16		44
일반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7		16	33
환경보호 일반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787	△0.5		787
일반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 행경비	53		0.5	53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신규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변경 사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총괄계획가 수당 추가 지급 마련을 위해 동일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변경 사용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변경사용을 하는 것은 지양되

어야 할 것임.

□ 명시이월(※결산서 p. 104)

○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2건, 20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76억 9천4백만원) 대비 56억 8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다음연도 집행실적(2018.05.31. 기준은 지출액 2천만원, 지출잔액 19억 9천1백만원으로 집행률이 1.0%에 불과함. 최근 명시이월을 하고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표 7〉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기출액	명시	2018년 (2018.5.	집행실적 31 기준)
" Т Н	0/117		16 1	이월	지출액	지출잔액
		3,160	599	2,011	20	1,991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시설비	1,160	66	870	0	870
공공 예술공간 조성(경상)	사무관리비	2,000	533	1,141	20	1,121

- 이 중,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시설비는 해당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11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6천6 백만원을 집행하고 8억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본 사업은 여론수렴 및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운영개선 추진 계획 수립이 지연됨(당초2017.6—변경2017.10)에 따라 운영개선 기본계획 (2018. 6 준공 예정) 및 시설개선 공사가 다음연도로 연기되었음. 과거에도 본 시설의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동일한 연구용역을 2차례7)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7) &#}x27;13. 2.~ 5. 뚝섬 자벌레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x27;14. 5.~ 12. 한강 복합 전시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 사업이다소 지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월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결산서 p. 105)

○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 97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22억 7천2백만원) 대비 74억 8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다음연도 집행실적은 지출액 18억 2천3백만원, 지출잔액 79억 3천4백만원으로 집행률이 18.7%로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저조한 수준임. 또한 '2017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고이월액 97억 5천4백만원은 한강사업본부 총 예산(예산현액 918억 4천2백만원)의 10.6%로, 향후 사고이월 발생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8〉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세부사업	통계 목	예산현 액	지출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집행 잔액	집행	연도 실적 ^{31 기준)} 지출 잔액
		35,825	20,871	2,011	9,754	3,190	1,823	7,930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4,183	3,176		656	351	191	465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시설비	1,160	66	870	214	10	161	53
운영 및 관리	시설 부대비	10			4	6	4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시설비	2,883	281		285	2,317		285
한강 함상공원 조성	시설비	10,440	9,313		1,122	5	1,122	0
인경 임경이전 소경	감리비	300	202		89	9	89	0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시설비	3,464	2,784		672	8	180	492
및 개선	감리비	360	300		60	0	60	0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	시설비	1,708	192		1,500	16		1,500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	시설비	317	177		140	0		140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시설비	1,600	1,530		16	54	16	
공공 예술공간 <i>조</i> 성 — 경상	사무 관리비	2,000	533	1,141	322	4		322
공공 예술공간 <i>조</i> 성 – 자본	시설비	7,400	2,317		4,673	410		4,673

- 이 중,「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시설비는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샛강 분류부 구간에 생물서식처 복원을 위해 17억 8백만원을 편성하여 1억 9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15억원을 사고이월, 1천6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조성 부지내 파크골프장 이전결정 지연을 이유로 이월 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이월 전액이 다음연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음. 이는 사업검토 및 집행계획을 사전에 면밀히살피지 못한 것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힘써야할 것임.
-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여의도 및 이혼한강공원내 공공예술 작품 설치 등을 목적으로 94억원을 편성하여 28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61억 3천 6백만원을 이월(명시이월 11억 4천1백만원, 사고이월 49억 9천5백만원), 4억 1천4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자문회의(2017.11)8) 결과에 따라 사업연장을 필요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현재까지 예산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이해되는 바임. 다만, 사업연장에 따른 사업 설계변경시(2017.12) 인건비와 운영비를 증액하고, 홍보비와 행사 비 등을 감액한 것은 본 사업의 근본 취지인 공공성 확보와 시민 참여 확대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⁸⁾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자문회의(2017.11.10.) 결과보고 주요 내용 : 작품 제작 기간이 짧아 부실, 졸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등

□ 예비비 지출 : 9억 2천2백만원(※결산서 p. 45)

 2017회계연도 예비비는 9억 2천2백만원으로 망원초록길 조성 관련 공사대금 청구와 자전거도로 사고 안전조치 미비 등 2건 모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임.

(표 9) 2016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액	지출 사유
2016년	816	•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손해배상금과 동작전망카페 명도소송 등 2건
2017년	922	• 망원초록길 조성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소송 판결금과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변 사고로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소송 판결금

□ **집행잔액**(※결산서 p. 83)

○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은 80억 1천1백만원(현액대비 불용률 8.7%)으로 예년에 비해 집행잔액이 증가하였는데,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의 시설비 집행잔액 23억 1천7백만원이 주된 이유이며, 그밖에 한강 공원 시설 유지관리 공사비에 따른 낙찰차액 등임.

〈표 10〉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91,842	75,643	65,121	64,685	64,548
불 용 액	8,011	3,761	5,235	5,030	1,938
불용률(%)	8.7	5.0	8.0	7.8	3.0

〈표 11〉 2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A)	지출액	집행잔액 (B)	B/A(%)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106	492	614	55.5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시설비	2,700	2,320	380	14.1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980	1,709	271	13.7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980	1,693	287	14.5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시설비	2,883	281	2,317	80.4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시설비	1,181	922	259	21.9

- 이 중,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사업의 시설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 예산현액 28억 8천3백만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2억 8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 8천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3억 1천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본 사업은 2017년 사업 추진시, 기본설계 후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나타남에 따라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불용처리한 것임. 이는 예산관리 및 운용 소홀이 불용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 2. 시설비 및 부대비
-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 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 차가 진행중인 경비
-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